

경운대학교 전기시설물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내 자가용전기공작물 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자가용전기공작물”이라 함은 전기사업 및 일반 전기 공작물을 제외한 우리대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기 공작물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직) 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업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은 안전관리자의 전기공작물관리 및 보안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관리계장은 전기 공작물의 운용 관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안전 관리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사무처장 및 관리계장의 감독 하에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작물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전기공작물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전기 공작물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4. 전기공작물의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5. 전기공작물의 화재 대책에 관한 사항
6. 보안용 자재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의 기록 및 제반 서류의 관에 관한 사항

제5조(업무의 문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자를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전기보안 영역과 분리한다.

제6조(보안의 범위) 전기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전, 변전, 배전 설비
2. 분전반, 간선설비
3. 조명시설(형광등, 백열등, 외등), 단 이동형 조명장치는 취급자 관리영역으로 한다.
4. 전열시설(콘센트) : 건물에 고정 설치된 콘센트에 한하고 사용 기계, 기구는 취급자의 관리영역으로 한다.
5. 동력시설 : 냉·난방, 급·배수시설, 급·배기시설 등에 고정 설치된 전기장치

제7조(관계자의 의무)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전기작물 취급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부재시 조치) 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안전관리자는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지식과 주요 시설물의 기능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안전관리자는 화재 기타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계획) 전기공작물의 설치, 변경, 수리, 개조 등의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실시) ① 제 11조에 의한 공사의 실시는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안전관리자의 감독으로 실시한다.

②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후 안전관리자가 점검하여 보안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순시, 점검 및 측정)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위한 순시, 점검, 측정 시험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제13조의 점검결과 기술기준에 적합치 않음이 발견될 때에는 사무처장은 당해 공작물을 수리, 변경을 하거나 그 사용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의 재발방지) 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 및 조작) ① 수전실 순회점검자는 기기의 이상이나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안전관리자와 같이 점검을 한 후 운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수전실의 차단기, 개폐기, 기타 조작기의 순서, 운전방법을 수전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 보안업무의 종사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 체계도는 관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범위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분기) ① 우리대학교와 한국전력 간의 재산 및 보안책임의 분기점은 우리대학교와 한국전력과의 수전 계약서에 명시된 지점으로 한다.

② 임대건물 및 자판기 등에 공급되는 전기 안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위험의 표시) 안전관리자는 수전실, 고압전선로, 기타 고압전기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